

감 사 보 고 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30주년 특별전 추진실태 점검

2024.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실태	3
III. 감사결과	5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7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기관의 미션달성을 위한 해외사업 추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높아짐
- 장기간 감사를 미실시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 관련사업을 감사대상으로 선정, 기관운영의 비효율·불합리 등을 제거함으로써 해외사업의 역량강화를 도모

2. 감사 중점사항

-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 재정비 및 내부통제 현황 실태 점검
 - 조직(추진단, TF 등)구성의 합리성 및 운영의 효율성
 - 협약 및 계약체결·관리의 적정성
 -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3. 감사인원 및 기간

- 감사인원(2명) : ☆☆☆ 과장(감사반장), ☆☆☆ 대리

성명	업무분장
☆☆☆	○ 감사총괄 ○ 베니스비엔날레 TF운영 및 30주년 특별전시 추진실태 점검
☆☆☆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추진실태 점검

- 감사기간

- ' 24.08.19.(월) ~ 08.23.(금) : 예비조사
- ' 24.08.26.(월) ~ 09.13.(금) : 실지감사 / 15일간
- ' 24.09.19.(목) ~ 11.19.(화) : 감사결과보고 및 처분요구서 발송

4.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팀 / ◇◇◇◇◇◇◇센터 / △△△△팀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22년~현재)
및 관련사업(제18회 건축전, 제60회 미술전, 30주년 특별전)
 - 베니스비엔날레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및 실태
 -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지침 준수 여부 등 검토

5.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최종 확정
 - '24.11.08.(금) 지적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및 조치부서 의견 수렴
 - '24.11.19.(화) 감사실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점검결과 최종 확정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실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사업

□ 사업목적

- 세계 주요 미술행사 중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에 1995년 한국관을 설립하여 매년 미술전과 건축전 전시개최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우리 미술과 건축을 해외무대에 소개함
- 한국 시각예술의 해외무대 진출 대표 거점인 한국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우리 문화 예술의 해외무대 소개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 강화

□ 사업추진방향

- 한국관의 운영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커미셔너로 참여하며, 전시를 총괄할 예술감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술계 전문인사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를 거쳐 선발
- 충실한 전시기획 및 준비를 위해 전시가 진행되기 전년도에 예술감독을 미리 선발하며 예술감독은 한국관 국가관 전시기획 총괄, 부대행사 진행, 국내외 예술계 인사 네트워킹, 국내외 전시 후원 진행을 담당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및 전시내역 ('23년 ~ '24년)

구분	예술감독	전시명
제18회 건축전 (' 23년)		
제60회 미술전 (' 24년)		

□ 최근 3개년 한국관 전시 및 운영 편성예산 ('22년 ~ '24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수용비	민간경상보조	기타	총액
' 22년				1,101
' 23년				1,093
' 24년				1,092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 추진배경

-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및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속 한국미술을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 마련 필요
-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를 맞아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역동성 제시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 비엔날레 주요 장소인 자르디니 공원 내에 마지막으로 건립된 국가관으로서 한국 미술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해온 한국관의 역사와 이를 통해 배출된 세계적인 한국 작가를 조명

□ 추진목적

- 한국관을 통해 배출된 세계적인 한국 작가 36명(팀) 조명 및 해외 홍보 확대
-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과 가치 제고를 위해 역대 한국관 참여작가 36명(팀)을 해외에 소개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관의 역할에 대한 통시적 고찰 및 성과 집대성

□ 추진개요

- 추진내용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 특별전시 개최
- 전시명 : 《모든 섬은 산이다 Every Island is a Mountain 》
- 기간 : 2024. 4. 18. ~ 9. 8.
- 장소 : 이탈리아 베니스 Palazzo Malta - Ordine di Malta
- 구성 : 특별전시 및 아카이브 전시, 개막행사, 연구·출판, 공공프로그램 운영 등

□ 편성예산 : 1,700백만원

Ⅲ. 감사결과

1. 총평

□ 최근 기관의 미션달성을 위한 해외사업 추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 이에 장기간 감사를 미실시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 관련사업을 감사대상으로 선정, 기관운영의 비효율·불합리 등을 제거함으로써 해외사업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함

□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사례와 모범사례가 확인 됨

[부적정 사례]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부적정
- ‘베니스비엔날레 ♥♥♥♥TF’ 설치 및 운영 불합리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기부금품 수령 및 처리 불합리

[모범사례]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현장의견 수렴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

□ 내부통제 관점에서 내부규정은 업무수행에 근간이 되는 규범으로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적시에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통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하며, 주기적인 리뷰로 타당성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시 개정·보완을 해야 함

□ 그런데 부적정 사례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기관의 정책 및 사업의 구조·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소관부서는 이에 맞는 절차를 수립하고 적시에 내부규정을 개정·보완함으로써 적절한 통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나, 이를 실기함으로써 행정예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에서 기인 함

□ 반면에 모범사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된 문제를 통해 내부규정의 하자를 인지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뿐만 아니라 잠재 된 위험까지 식별하고 이를 함께 제거함으로써 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의 모범을 보였기에 선정 함

□ 그러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관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여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규정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등과 같은 해외사업의 대표성·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취재기자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홍보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다변화 된 매체 환경에 맞춰 영상 및 온라인을 아우를 수 있는 취재인력을 기관이 직접 섭외하여 운영·관리하는 등 기관 중심의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 됨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총건수	합계		변상	징계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6	-	-	-	-	-	-	-	-	-	3	-	2	-	1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제 목(지적사항)	처분종류	처분요구사항	조치부서
1	[한국관 (건축전·미술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부적정	개선요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사업운영 및 관리 프로토콜을 재정립,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정비 실행	○○○ ○○팀
		통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에 대한 위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방안 검토 및 소관부서의 사업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	△△△△팀
2	[30주년 특별전] ‘베니스비엔날레 ♡♡♡♡TF’ 설치 및 운영 불합리	개선요구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상위법령 및 타 기관의 유사규정 등을 참고하여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	△△△△팀
3	[기부금품 업무처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기부금품 수령 및 처리 불합리	개선요구	「기부금품 관리규정」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보완하여 개정	◇◇◇◇ ◇◇센터
		통보	기업대상의 전략적 제휴형 기부자 예우제도 등 체계 정비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	◇◇◇◇ ◇◇센터
4	[한국관 (건축전·미술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현장의견 수렴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	통보 (모범사례)	과제해결 사례를 내부통제 제도개선 모범사례로 선정, 기관 전 부서에 공유·전파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해당사항 없음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증거서류 목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 통 보

제 목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한국 시각예술의 해외무대 진출 대표 거점으로서, 세계 주요 미술행사 중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에 '95년 한국관을 설립하여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되는 미술전과 건축전 전시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우리 미술과 건축을 해외무대에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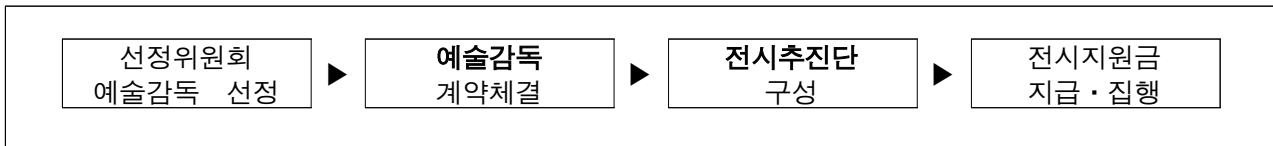
예술위는 [표1]과 같이 커미셔너¹⁾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에 따라 [표2]와 같이 해당하는 미술·건축계 전문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예술감독을 선정, 전시계약서를 체결하여 예술감독에게 전시추진단을 설립하게 하는 등, 예술감독에게 한국관 전시기획 총괄, 부대행사 진행, 국내외 예술계 인사 네트워킹, 국내외 전시 후원 진행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1) 예술위는 '95년부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6년 변경된 베니스비엔날레 행사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커미셔너 역할을 담당함.

[표1]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역할 구분

구분	주요역할
커미셔너 (예술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국가의 공식적인 대표로 관련 행정을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예산 지원 및 후원, 국내외 홍보, 개막식 등 현지 행사 진행, 국가관 건물 운영 책임 ○ 해당 국가의 국가관에서 열리는 전시에 대한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구성안 검토 및 승인, 실무 자문회의 및 검토 회의 개최, 현장 평가단 운영 및 사후 평가
예술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국가의 예술 관련 업무를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 전시 및 관련 부대행사 기획 및 진행, 국내외 예술계 인사 네트워킹, 국내외 전시 후원 진행

[표2]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업무추진 단계



예술위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을 [표3]과 같이 예술감독 및 전시추진단에 소정의 민간경상보조금('23년 건축전 580,000천원, '24년 미술전 620,00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추진·운영되는 보조사업으로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관련 연간 집행예산 ('23년 ~ '24년)

집행주체	구분	'23년 건축전	'24년 미술전
예술감독·전시추진단 (전시지원금)	민간경상보조금	580,000,000원	620,000,000원
	기부금품		
	소계		
예술위 담당부서	한국관 운영 ²⁾ *		
합계		1,215,500,000원	1,393,000,000원

* 한국관 운영예산은 당해연도 전시운영 및 차년도 전시준비에 함께 사용 됨

또한 예술위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관 전시의 사전 준비, 공간관리 및 운영, 한국관 공사추진 등 베니스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업무(한국관 관련 현지 행정업무 등) 수행의 효율성·전문성·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 공간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총괄 매니저와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2) 주요 집행 예산 : 한국관 유지공사비, 총괄 매니저 용역 및 전시 안내요원 사례비. 차년도 선정위원회 운영비 등

2. 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커미셔너로서의 조직체계와 역할정립 비합리

예술위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커미셔너를 맡게 됨에 따라,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주관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채용조성, 홍보마케팅, 행사진행 및 시설관리 등 커미셔너 역할 이행을 미술계, 건축계 현장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례적인 한국관 관리 업무 외에는 예술감독에게 거의 모든 권한이 일임³⁾되고 있어, 예술위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후에나 인지하게 되어 자체대응이 적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는 [표4]와 같이 수년간 행정지원 및 후원유치 등에 대한 업무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였으나, 실효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그간 사업이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표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및 운영 기본계획('23년-'24년) 중 사업운영 개선방향 일부발췌

연도	소관	주요역할
'23년	♣♣♣부	커미셔너 역할수행 강화 ○ (후원체계 마련) 후원기업 네트워크 강화 및·장기·충실 후원 고객 확보 - (배경) 제한된 전시지원금 외 안정적 후원금 확보로 전시 준비 - (방안) 기존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유경험 기업들을 잠재 후원기업으로 목록화하여, 체계적·전략적 후원기업으로 고객관리 및 후원 이탈 방지를 위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후원 예우프로그램 시행
'24년	○○○ ○○팀	커미셔너 역할수행 강화 ○ (후원체계 마련) 후원기업 네트워크 강화 및·장기·충실 후원 고객 확보 - (배경) 제한된 전시지원금 외 부족한 자원확보에 대한 추가 자원 요구 - (방안) 후원기업에 대한 프로토콜 정립 *기존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유경험 기업들을 잠재 후원기업으로 목록화하여, 체계적·전략적 후원기업으로 고객관리 및 후원 이탈 방지를 위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후원 예우프로그램 시행 *후원규모별 후원 혜택사항, 홍보물 후원사 로고 표기 방법 등 가이드라인 제공, 사업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 피드백

3) 전시계약서상에 명시된 예술감독의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전시 기획 및 총괄, ②작가 및 작품의 섭외·선정, ③도록 등 인쇄유인물 제작, ④전시 디자인, ⑤작품 운송, ⑥작품 보험, ⑦전시 설치·철수, ⑧개막식, ⑨홍보, ⑩전시 진행, ⑪ 한국관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제공, ⑫보험가입 등

이는 예술위가 집행하는 연간사업비가 4,000억원⁴⁾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할 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은 직원 1인이 담당하여 보조금 6억원을 투입하는 비교적 작은 지원사업으로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파악된다.

그러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가지고 있는 국제 미술계·건축계의 문화적 영토로서의 상징성을 비롯, 전시사업이 한국미술의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국건축 세계화의 중요한 기점 역할을 담당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원의 성격, 조직구성 및 추진체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전시추진단 설치·운영방식 부적정

소관부서는 전시계약서 제7조(전시추진단 구성)에 근거하여 예술감독에게 본인을 대표로 하는 전시추진단⁶⁾을 설립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등을 교부하여 집행·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소관부서는 예술감독에게 전시추진단 설립을 위한 행정양식 및 고유번호증 발급방법 등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 결과, [표5]와 같은 내용이 전시추진단 정관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예술위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임의단체로 해석될 수 있어, 예술위가 비영리법인을 설립 및 출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5조(출자회사 등의 설립과 운영) 위반소지가 있다.

4) '24년 예술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준

5) 예술위 50년사 <예술과 세상을 잇다> 발췌

6) '12년 건축전 진행시 커미셔너 선정 약정에 의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커미셔너가 개인자격으로서 전시 추진을 위한 해외 송금액 제한, 원천징수 불가 등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운용지침 준수에 어려움 발생으로 당시 커미셔너를 대표자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추진, 이후 관례화 됨

특히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추진단’은 정관 제7조(임원)에서 감사 1인을 당시 소관부서장인 ♣♣♣♣부장을 당연직으로 두었는데, 이 경우 소관부서장 본인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되므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고, 예술위 외부에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므로 「직원복무규정」 제5조(겸직금지) 및 「사무처직원 외부활동 운영지침」 제4조(겸직 신청 및 승인)를 위반하게 되기에 행정의 불합리가 있다.

[표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추진단 정관 ('23년- '24년)

제5조	본 단체는 <u>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조직을 구성</u> 하고, 임원은 <u>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임</u> 한다.
제7조	(임원) 이 단체의 이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추진단장 (대표) : 1명 / 2. 사무국장 : 1명 / 3. 자문위원 : 2명 이상 / 4. <u>감사 : 1명</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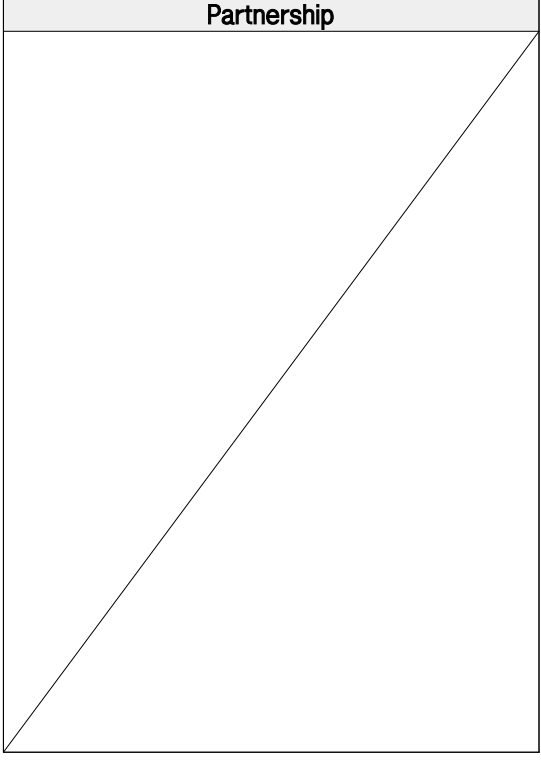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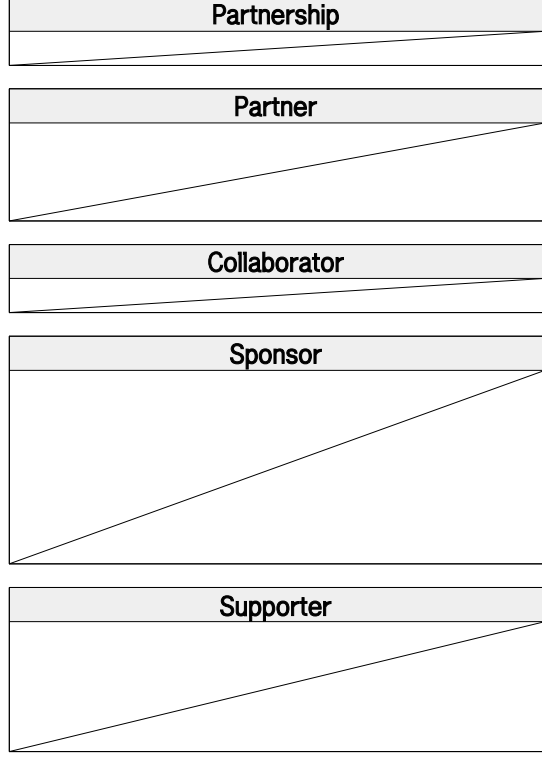
다. 수익금 관리 부적정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기간 중 발생 된 수익금을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집행내역은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예술감독은 전시계약서 제8조 (예산) 제10항에 근거하여 기업체 등의 후원을 유치하여 전시 경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추후 후원 및 사용내역을 사업성과보고서에 포함시켜 예술위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용은 예술위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에 참여한 후원사는 [표6]과 같다.

[표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후원사('23년~'24년)

구분	'23년 건축전	'24년 미술전
후원사		
	* 조건부기부금 접수 기관	

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관련 마케팅 규정 불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은 지적재산권⁷⁾, 상품화권⁸⁾, 후원권⁹⁾ 등 다양한 마케팅자산이 발생하고, 이를 활용한 수익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와 예술위 정관 제22조(수입금)에서 정하고 있는 예술위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는 이와 같은 마케팅자산의 활용 및 보호 등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규정이 불비하여 임의처리 되고 있다.

7)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 (저작권 등)
 8) 어떤 상품의 이름이나 특징을 상표 등록 하여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권리
 9) 마케팅자산을 계약으로 정해진 범위와 방식으로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권리

②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협찬금품에 대하여 조건부기부금품 처리 불합리

소관부서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후원권에 대한 마케팅활동으로 유치하여 전시추진단에 제공하는 조건부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 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집행내역이 관리·감독되고 있는데, 최근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전시추진단에 제공 된 조건부기부금은 [표7]과 같다.

[표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관련 예술위 조건부기부금품 유치 내역 ('23년~'24년)

(단위 : 원)

관리주체	집행주체	'23년 건축전		'24년 미술전	
예술위 (조건부기부금)	전시추진단		100,000,000		200,000,000
			30,000,000		28,000,000
			12,500,000		53,000,000
합계			142,500,000		281,000,000

「기부금품 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관련 조건부기부금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후원사가 전시추진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는 후원사와 ‘후원사 로고 노출’, ‘타이틀 스폰서 제공’, ‘초대권 및 전시투어 제공’ 등 소정의 반대급부를 약속하는 ‘후원약정’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협찬금품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의 불합리가 있다.

③ 보조사업자 마케팅활동에 따른 수익금 집행·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민간기업 등의 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고,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하면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예술위를 통해 전시추진단에 제공되는 조건부기부금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후원이 예술감독과 참여작가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후원에 따른 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소관부서에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며, 또한 보고가 되는 경우에도 후원사의 요구 및 후원금품의 종류에 따라 소관부서는 「기부금품 관리규정」에만 근거하여 관리·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조사업 수익금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라. 한국관 관리 현지 업무 개선 필요

한국관 관리 현지 업무는 [표8]과 같이 공사, 설치 등 현장 감리·감독을 담당하는 ‘건축사’와 전시행사 및 시설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로 구분되는데, 예술위는 '10년부터 현재까지 이탈리아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한 ☆☆☆ 매니저¹⁰⁾에게 용역계약을 통해 두 업무를 동시에 의뢰하고 있다.

[표8]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관련 주요 역할 및 업무

역할	주요업무
건축사 (감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의 공사, 설치 등 현장 감리·감독 - 건축전, 미술전의 작품 전시 및 설치를 위한 공간 조성 공사 - 한국관 유지 공사 등 ※ 이탈리아 건축사 자격증 필요
코디네이터 (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 전시행사 및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술감독 및 전시추진단의 협조 요청사항 수행 - 전시 안내요원 관리 및 작품 관리 - 주요 관람객 대상으로 전시 안내 등

10) ☆☆☆ 매니저는 '06년 당시 현지 유학생으로서 한국관 코디네이터로 채용 됨. 당시 한국관 공사('03년~'07년)의 경우 담당 감리자(●●● 소장)가 이탈리아 건축가가 아니어서 매년 국가관 공사 후 감리자 날인을 받아 비엔날레 본부에 제출해야하는 안전공사 확인서에 단독 서명을 할 수 없어 현지 건축가와 협업하는 등 공사 및 감리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음. 따라서 보다 원활한 공사 및 감리 진행을 위해 '08년 커미셔너(◆◆◆)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탈리아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지 건축가로 활동 중인 ☆☆☆씨로 감리자를 변경하도록 함. 이후 '10년부터 기존 계약을 종료 하고 한국관 매니저로서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 함.

소관부서는 ☆☆☆ 매니저가 장기간 매니저 업무를 맡아 옴에 따라 축적 된 업무 숙련도 및 현지 네트워크가 고려 된 신뢰를 바탕으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의 추진체계는 건축사, 코디네이터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특수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매니저에게 한국관 관리업무가 일임되다 보니, 현지에서는 예술위가 배제된 채 예술감독(전시추진단)과 매니저 간에 부적절한 업무지시 및 수행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구성원인 예술위, 예술감독(전시추진단), 매니저 간 업무분장 및 업무 위계를 구체적으로 설정, 소관부서가 한국관 매니저의 역할 및 활동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예술감독(전시추진단)과의 협의 등을 조율하도록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팀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 된 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며 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소관부서의 역량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직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처 차원의 조직 및 인력 보강, 후원 및 홍보 시스템 개선, 현지 업무 지원 등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커미셔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팀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의 개선책 마련과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재원 성격, 조직 구성, 추진체계 재검토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가 조치하는 과정 중 △△△△팀에 요청 또는 조치 필요사항 발생 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 ① ○○○○○팀장은 커미셔너로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 등과 협업하여 사업운영 및 관리 프로토콜을 재정립, 시설 운영관점으로 제정되어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실행하시고, [(행정상)개선]
- ② △△△△팀장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에 대한 위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시고,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베니스비엔날레 ♡♡♡♡TF’ 설치 및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및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는 '24년 베니스비엔날레 현지 특별전 개최를 위해 아르코미술관 산하 임시조직으로서 ‘베니스비엔날레 ♡♡♡♡TF(이하 ♡♡♡TF)’를 설치하고, [표9]와 같이 팀장 1인을 포함한 총 4인의 직원을 인사발령 조치하고 조직을 구성, ①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②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기획 및 운영 ③부대 행사(리셉션, 포럼, 공공프로그램 등) 기획 및 운영 ④통합 홍보마케팅 추진 ⑤신규 후원사 발굴 등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 '23.10.2.부터 '24.5.10.까지 운영하였다.

[표9] ♡♡♡TF 인사발령 내역 ('23.9.21. 게시)

연번	부서	성명	직급	발령사항	발령일자
1	△△△△△△△△△△팀	AAA	일반직4급	○ 베니스비엔날레 ♡♡♡♡TF 팀장에 명함	'23.10.2
2	△△△△△△△△△△팀	BBB	일반직5급	○ 베니스비엔날레 ♡♡♡♡TF 근무를 명함	'23.10.2
3	△△△△△△△△△△팀	CCC	계약직	○ 베니스비엔날레 ♡♡♡♡TF 근무를 명함	'23.10.2
4	▣▣▣▣▣▣▣▣부	DDD	일반직4급	○ 베니스비엔날레 ♡♡♡♡TF 파견근무를 명함	'23.10.2

2. 판단기준

예술위 정관 제27조(기구 등)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고, 특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예술위는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에서 임시조직(TF)의 설치기준을 ‘비상설 기구로, 긴급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구성’이라고 설정하고 있으며,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¹¹⁾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살펴보면, ‘임시조직 설치·운영지침’에서 임시조직을 행정기관에서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정규조직으로 정의하고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의 결재를 받거나 법령을 근거로 설치하며,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직제 상의 상시적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등, 임시조직 설치 근거 및 운영 기준, 존속기간, 인력활용, 지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준하여, 타 기관의 임시조직 관련 규정·규칙 등에서도 설치·폐지 등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구성 및 운영의 총괄부서, 소관부서 등을 정의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에 대한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임시조직의 설치, 업무,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제한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원장의 필요에 의해’ 또는 ‘위원장의 지정 및 지시’ 등만으로 임시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근간이 되는 규범으로서 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11) '09년 제정 후, 상위 법령 및 시책 등에 따라 현행화 된 적 없음

※ '15.11.16. 개정이 있었으나 관련규정 명칭 변경에 따른 단순 수정으로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은 없었음

이러한 임시조직 관련 규정의 미흡으로 ‘♡♡♡TF’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었다.

가. 설치 근거가 없는 조직으로 인사발령

인사를 담당하는 □□□□부(現 □□□□팀)는 '23.9.20. 위원장 결재로 ‘♡♡♡TF’ 총 4인(파견 1명 포함)의 인사발령¹²⁾을 '23.10.2.자로 단행하였다. 그런데, '24.1.16. 제168차 규정심의회위원회 의결로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미술관 하부조직으로 명시되기 전까지, ‘♡♡♡TF’는 설치근거가 없는 임의조직¹³⁾이었다.

나. 상시적 업무를 임시조직에 부여

예술위는 ‘♡♡♡TF’를 구성하면서, 당시 ○○○○○부(現 ○○○○○팀)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업무 총괄’ 업무담당자를 임시조직으로 파견발령 하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업무를 임시조직인 ‘♡♡♡TF’에서 처리하였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상 ○○○○○부에 분장되어 있던 상시적 업무에 해당한다. 임시조직은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직제에 따라 기존 조직에 상시적으로 부여되어 있던 업무를 업무담당자의 파견발령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른 부서별 분장업무 개편 없이 임시조직에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2) 해당문서 : □□□□부-13204 (2023.09.20) “인사발령(TF 및 부서이동 등)”

13) ‘♡♡♡TF’는 설치근거에 해당하는 문서(베니스비엔날레 ♡♡♡TF-20 (2023.10.16) “베니스비엔날레 ♡♡♡TF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를 직접 작성하여 위원장 결재를 받았으나, 임의조직이 스스로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행정행위는 절차적 하자가 있음

관계부서 의견

△△△△팀은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TF’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업무가 부여된 것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2조 등에 근거,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부서별 업무분장과 차별화되는 해당 업무의 특수사항이 발행했다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기존 조직 업무의 특수사항 발생 및 임시조직 구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 파악 등 담당부서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팀장은 임시조직 운영 및 관리의 책무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상위법령 및 타 기관의 유사규정 등을 참고하여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흡한 규정에 따른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 통 보

제 목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기부금품 수령 및 처리 불합리

소 관 부 서 ◇◇◇◇◇◇센터

조 치 부 서 ◇◇◇◇◇◇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센터(舊 ◇◇◇◇◇◇센터)는 공공지원 집중을 완화하고, 문화예술 분야 재원다각화를 위해 기부금품 등을 수집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에 배분하고 있다. 이 때 기부금은 독립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관리·집행 된다.

‘베니스비엔날레 ♥♥♥♥TF(이하 ♥♥♥TF)’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를 추진하면서, 개막행사 및 공공프로그램 운영, 전시작품 운송, 참여작가 사례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10]과 같이 기부금을 모집하고 ◇◇◇◇◇◇센터를 통해 조건부(지정)기부금품으로서 수납하여 사업비로 집행하였다.

[표10]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관련 조건부(지정)기부금품 수납 내역

기부일자	기부자	기부금액	수혜처	사업명
' 23.12.28.		300,00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TF'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 24.2.28.		200,000,000		
' 24.3.18.		39,750,000		
' 24.3.29.		100,000,000		

2. 판단기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 배부 등을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술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술위는 정관 제22조(수입금)에 따라 예술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의 경비 및 위원회의 운영경비를 기부금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부금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용하고 기부금품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술위로 접수되는 기부금품은 [표11]과 같이 분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사용하고 있다.

[표11] 「기부금품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부금품의 종류

종류	내용
일반기부금품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지원방법 등의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예술위로 접수
조건부(지정)기부금품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지원방법 등의 조건을 지정하여 접수
실명제기부금품	기부금의 명칭, 사용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기부자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기금형태로 운영

이와 관련, 「기부금품 관리규정」 제5조 제4항에는 조건부(지정)기부금품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은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사기업간의 후원¹⁴⁾계약과 이에 기초한 후원금품 수수는 형법상 뇌물죄와 긴장관계에 서게 된다. 모든 뇌물범죄에서 이익의 약속, 공여, 수수가 결부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후원관계 속에도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후원금품은 뇌물의 경우와 같이 대가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후원은 후원 계약에 기초하여 이행되고, 뇌물은 직무행위와 부정한 이익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이 행사를 주체하면서 후원을 받는 경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아야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후원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¹⁵⁾과 실체적 요건¹⁶⁾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부금품 관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경우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관리·처분되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후원금품의 경우 차별화된 방식으로 정당한 권원을 갖추어 관리·처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예술위를 수혜자로 하는 조건부(지정)기부금품 처리 불합리

예술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기부금품 관리규정」 제5조 제4항에서 조건부(지정)기부금품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은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동

14)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

15)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16)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함

규정 제11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수혜자로 하는 조건부기부금품의 사용)를 제정하여 예술위를 수혜자로 하는 조건부(지정)기부금품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규정의 불합리가 있다.

조건부(지정)기부금품 접수·처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서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이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기업이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은 암묵적인 기부강요(준조세화)가 되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기부금품 관리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조건부(지정)기부금품의 수납 여부를 예술위가 결정하기 위한 판단근거로서 활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예술위를 수혜자로 하는 조건부(지정)기부금품의 접수·처리는 모순된다.

그러나 예술위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주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받아 집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합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협찬금품에 대하여 기부금품 처리 불합리

‘♡♡♡TF’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추진을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서 기부자들과 ‘후원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기부금품에 대하여 ‘메인 스폰서 타이틀 제공’, ‘주요 홍보 및 마케팅 노출’, ‘VIP 전시투어 제공’, ‘특별전시 공간 대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령했다면, 이는 행사개최 등으로 발생 되는

유·무형의 마케팅자산을 활용한 마케팅수익인 협찬¹⁷⁾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기부금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처리의 불합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TF’의 요청을 받아 관련 재원을 기부금품으로 수납·처리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및 판단

가. 예술위를 수혜자로 하는 조건부(지정)기부금품 처리 불합리

◇◇◇◇◇◇센터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예술위 주관 기부금사업이 다양화되면서 관련 규정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협찬금품에 대하여 기부금품 처리 불합리

◇◇◇◇◇◇센터는 <서울, 기부 길라잡이(2019)¹⁸⁾>에 근거하여, 감사에서 반대급부로 지적한 ‘메인 스폰서 타이틀 제공’, ‘주요 홍보 및 마케팅 노출’, ‘VIP 전시투어 제공’, ‘특별전시 공간 대관’에 대하여 ‘전략적제휴형’ 예우체제로 구분되는 기부금품에 대한 ‘예우사항’으로 판단해야 하며, 예술위 사업의 대중적 파급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면 후원사가 취득하는 이익이나 대가의 양과 가치가 후원금에 비해 적으므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부금품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신청서 외에 ‘♡♡♡TF’와 후원사 간의 ‘후원약정서’에 따르면, 후원에 대한 혜택을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혜택의 규모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센터의

17) 기업체 등에서 해당 기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어떠한 행사 등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18) 서울시 발간

‘후원사가 취득하는 이익이나 대가의 양과 가치가 후원금에 비해 적다’는 일방의 주장이며, 이러한 ‘후원약정서’를 등가적 급부와 반대급부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제공됨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하고 모든 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기부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기부금품 관리규정」 제1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위원장은 기부금품 수납을 결정하였을 때는 기부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우수기부자에게 상패 시상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예우 방법과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등을 살펴봐도 ‘전략적제휴형’에 해당하는 예우체계로써 기부자에게 어떤 예우가 가능한지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경에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시> 후원사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예술위가 추진하는 다른 모금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기부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기부금품에 대한 예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소관부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유형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실시하여 기부금품 모집활동의 지속성,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센터장은

- ① 「기부금품 관리규정」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보완하여 개정하시기 바라며, [개선요구]
- ② 공공의 이익증진 및 기관의 재정확보를 위한 원활한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위하여 기업대상의 전략적 제휴형 기부자 예우제도 등 체계 정비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통 보 (모범사례)

제 목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현장의견 수렴으로 내부통제 제도 개선

소 관 부 서 ♣♣♣♣부

조 치 부 서 감사실

모 범 내 용

♣♣♣♣부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소관부서로서 ('22년)미술전·('23년)건축전 운영 및 커미셔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1.4월부터 8월까지 '22년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절차 추진하던 중 일부 선정위원 제척사유 위반 이슈 발생으로 선정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당시 예술감독 선정절차는 예술위가 ‘베니스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예술감독 후보자 공모 및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절차에는 선정위원 섭외 후 예술감독 후보자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선정위원과 예술감독 후보자 간 제척·회피 사유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선정위원회에 ‘공모요건 결정’, ‘심의방식 결정’ 및 ‘감독 선정’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상기 부서는 '21.10.22.부터 '21.11.11.까지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절차 개선 자문회의를 3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러한 의견 수렴 노력의 결과로 '22.3.2.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절차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23년 제18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추진부터 적용·시행하였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을 개정으로 운영자문위원회를 신설, 예술감독 선정을 위한 공모요강 결정, 선정위원 후보자 추천 등 기존에 선정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일부 분산시킴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이 때 설치되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사업기간 중 상설화 함으로써 한국관 운영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예술감독 후보자 서류접수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 선정위원 섭외 시 심의회피 및 제척사유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발생 요인을 제거하였다.

한편,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에 도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 외에도 추가적인 행정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이 수집되었는데, 기존의 예술감독 지원신청은 기획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작가 또는 콜렉티브그룹 등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술감독 공모요강 및 제출양식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사업>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소관부서의 활동은 사업추진 과정 중에 제기되는 대·내외의 지적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현장과 소통함으로써 책임을 다해 해결방안을 도출,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제거하여 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부가 추진한 이 과제해결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오니 향후 과제해결에 참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모범사례)]